

제2장 국내스포츠규정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개정	2023년 1월 1일
개정	2024년 1월 1일

제1조 총칙

제1.1조 자동차경기의 국제적 총괄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은 각국의 자동차경기와 자동차 이스포츠(Automobile Esports) 기록을 관장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권한 기구이고 FIA 국제 챔피언십과 FIA 국제 이스포츠(Automobile Esports) 챔피언십을 주관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최종 국제심의 기관이다.

제1.2조 국제스포츠 규정 (International Sporting Code, ISC)

FIA는 스포츠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제스포츠규정을 제정한다. 국제스포츠 규정 및 그 부칙의 목적은 국제 모터스포츠를 부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제스포츠 규정은 경기 및 선수의 참가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단, 모터스포츠의 안전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FIA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자동차경기의 국내적 총괄

FIA에 가입하는 각 나라의 클럽과 단체는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한다. ASN은 FIA가 각 나라 별로 스포츠 권한을 인정한 유일한 단체로 해당 국가의 국내스포츠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자동차경기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취소

각국의 ASN은 FIA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스포츠규정에 의해 부여된 스포츠 권능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자국의 다른 일개 혹은 여러 개의 단체에 위임하는 권리를 가지며 FIA에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국내스포츠규정의 제정권

각국의 ASN은 국내스포츠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이 규정은 FIA의 국제스포츠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FIA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제1.6조 국내의 총괄권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FIA에 의하여 한국 대표로서 공인되며 FIA의 정관 및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의하여 국내의 자동차경기와 자동차 이스포츠(Automobile Esports)를 관리, 총괄하는 유일한 권한 단체이다.

제1.7조 국내스포츠규정의 제정과 시행

KARA는 전조의 권한을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FIA의 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스포츠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4륜차 이상의 자동차 참가 및 자동차 이스포츠(Automobile Esports) 경기를 위해 국내에서 조직되는 KARA의 모든 공인 경기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와 정의

제2.1조 개요

이하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약칭은 국내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및 부칙에 준한 모든 특별규정에서 적용되며,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 1. FI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 Automobile)**
국제자동차연맹의 약칭으로 공인된 각국 자동차단체에 의하여 구성된 유일한 국제적 기관이다.
- 2. ASN (Authority Sporting National)**
FIA에 의하여 공인된 각국 국내의 모터스포츠를 총괄하는 단체의 약칭이다.
- 3. KARA**
본 협회의 영어명(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의 약칭이다.
- 4. 자동차 (Automobile)**
모두가 한 줄로 늘어 서 있지 않는 적어도 네 개의 바퀴가 지속적으로 지면(또는 얼음)과 접촉해 있으며,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조향에,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추진에 쓰이고, 탑승한 선수가 그 동력과 조향 시스템을 항상 제어하는 운송 수단.(경기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량, 트럭, 카트를 포함한, 그러나 이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다른 용어들을 자동차와 바꿔서 쓸 수 있다)
- 5. 경기 (Competition), 대회 (Event)**

경기(Competition)는 개별 결과를 갖는 모터스포츠 활동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히트, 결승, 연습주행, 예선 주행과 카테고리별 결과로 구성된다. 경기 종류에는 서킷레이스, 랠리, 크로스 컨트리 랠리, 드래그 레이스, 힐 클라임, 기록 경기, 테스트, 트라이얼, 드리프트 등이 있으며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가 있다.

대회(Event)는 여러 개의 경기(Competition), 퍼레이드, 데모 주행, 투어링 어셈블리(Touring Assembly)등으로 구성되는 집합이다.

- 6. 경기참가팀 (Team)**
KARA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경기참가를 정식으로 접수한 팀을 말한다.
- 7. 결승선 (Finish Line)**
시간 측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의 컨트롤 라인을 말한다.
- 8. 공인 (Organizing permit)**
국내경기 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대해 국제스포츠규정과 국내스포츠규정에 맞추어 기록, 조직, 일정, 대회특별규정 등을 KARA가 허가하고, KARA 캘린더에 등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 9. 공식 프로그램 (Official Program)**
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공식문서를 말한다.
- 10. 국내경기 (National Competition)**
국내 경기는 국제스포츠규정 제3조에 의거 KARA 공인 하에 개최되며 다음 사항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 1) KARA 및 타국 ASN 등 FIA 회원 단체에서 발행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
 - 2) KARA의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
- 11. 국내기록 (National Record)**
선수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ASN이나 타지역의 ASN에 의하여 승인된 규정하에 세워지거나 갱신된 기록을 말한다.
국내기록은 그 기록 캘린더에 적격한 차량의 규격이 세분화된 클래스 중 하나로 획득한

최고기록 인 경우에는 국내 클래스기록(Class record)이라고 부르며, 또 클래스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최고 기록인 경우에는 국내 절대기록(Absolute record)이라고 부른다.

12. 국내 라이선스 (National Licence)

ASN이 발급한 자국내 경기에 대해서만 유효한 라이선스를 말한다.

13. 국적 (Nationality)

KARA에 등록된 팀이나 KARA가 발급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는 라이선스 기한 동안은 대한민국 선수로 간주한다. 그러나 FIA 월드 챔피언십 경기에 한해서는 선수의 여권 국적을 공식문서, 기록, 시상 등에 적용한다.

14. 국제경기 (International Competition)

FIA에서 공표한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일반 규정에 따른 국제 안전의 표준 수준을 획득한 경기를 말한다.

FIA 또는 타 ASN 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여야 한다.

15. 국제기록 (International Record)

국제기록이란 소정의 클래스 구분, 그룹 구분으로 수립된 최고의 성적을 의미한다. 이 기록에 관한 내용은 FIA 국제 규정을 따른다.

16. 국제 라이선스 (International Licence)

FIA를 대리하여 ASN이 발급한 라이선스이며 그 라이선스의 수준에 적절한 국제 경기에 대해서 유효하다. 단, 이는 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들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17. 기록 (Record)

규정되어 있는 특별조건 아래 수립된 최고의 성적을 말한다.

18. 기록보유자 (Holder of the Record)

개개의 기록 캘린더에 있어서 수립된 기록은 도전 허가서의 명의인이고 그 공인신청서의 서명인을 두고 기록보유자라 한다. 경기 중에 수립된 기록은 그것에 의하여 해당 성적이 수립된 자동차의 사용 명의인인 경기 참가자를 두고 기록보유자라 한다.

19. 대회특별규정 (Supplementary Regulations)

해당 대회의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따라서 주최자가 KARA의 승인을 받은 것보다 구체적인 문서화된 규정을 말한다.

20. 드리프트 (Drifting)

포장된 노면에서 접지 면과의 마찰력, 자동차의 관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방향을 컨트롤하는 것을 겨루는 경기이다.

21. 드래그 레이스 (Drag Race)

적어도 두 대의 자동차 사이에서 벌어지며 하나의 직선 구간에서 출발선에서부터 레이스를 벌이고, 정확하게 측정된 코스에서 결승선을 먼저(별칙 없이) 통과한 자동차가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 가속 시합을 말한다.

22. 랠리 (Rally)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열리는, 평균 속도를 부과하는 도로 경기. 하나의 랠리는 모든 차량이 따라야 하는 단일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같은 랠리포인트에 모이는 여러 개의 일정,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 일정이 있거나 없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경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페셜 스테이지, 곧 일반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최되는 이벤트로, 이들을 모두 합쳐서 랠리의 총 순위를 결정하는 구간을 하나 또는 여러 개 둘 수 있다.

스페셜 스테이지로 쓰이지 않는 일정은 로드 섹션이라고 부른다. 이들 로드 섹션은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를 부분 활용하는 경기지만 상설, 또는 준상설 서킷에서 진행되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랠리의 전체거리 가운데 20% 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피드 경기로 보아야 한다.

23. 라이선스 (Licence)

어느 지위 든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에서 관할하는 경기에 참가 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선수, 경기 참가자, 차량제조사, 팀, 오피셜, 주최자, 서킷, 그 밖에 등)에게 발급되는 등록증. 자세한 내용은 각 등록 규정에 준한다.

24. 라이선스 등록명부 (Licence-Holders' Register)

KARA에 의해 선수 라이선스를 발행 받은 자의 명부로 KARA가 보관한다. 등록명부에는 개개의 라이선스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5. 라이선스 번호 (Licence Number)

라이선스 발급 시 KARA에 의해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26. 마일 및 킬로미터 (Mile and Kilometre)

미터법에 의하여 1마일은 1.609344km로 하고, 1km는 0.621371mile로 환산 측정한다.

27. 서킷 (Circuit)

시작과 종료지점이 같고 고유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경주를 위해 특별하게 건설되었거나 특별하게 설치된 폐쇄된 코스를 말한다.

서킷은 설비의 특성 및 경기에서의 이용도에 따라 임시, 준상설, 상설로 나눌 수 있다.

28. 서킷 레이싱 (Circuit Race)

서킷에서 열리는 경기로,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은 세션 내에 출발하여 동일한 코스를 주행하고 속도 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서의 주행거리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를 말한다.

29. 선수 (Driver)

KARA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의 소지자로 경기에서 경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30. 세계기록 (World Record)

클래스에 관계없이 차량이 수립한 최고의 성적으로 FIA에 의하여 공인된 기록을 말한다.

31. 스피드웨이 (Speedway)

4개의 코너를 넘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는 상설 서킷을 말한다.

32. 슬라럼 (Slalom)

한 번에 한 대의 자동차가 미리 설정된 장애물을 통과하고 달성한 능력과 시간이 결정 요인이 되는 폐쇄 코스에서 개최되는 경기를 말한다. 보통 직선 주로 가운데 장애물을 설치하여 지그재그 주행을 하는 형태이다.

33. 실격 (Disqualification)

실격은 개인 또는 여러 명이 계속해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격은 경기의 일부(예: 히트, 파이널, 자유 연습, 예선, 레이스 등), 전체 경기 또는 동일한 대회 내

의 여러 경기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선언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기 또는 경기의 일부 후에 선언될 수 있다. 실격된 사람의 해당 결과나 시간들은 무효 처리된다.

34. 실린더 용량 (Cylinder Capacity)

1개 또는 그 이상의 엔진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으로 생기는 배기량을 말한다. 이 용량은 세제곱 센티 미터로 나타내고, 실린더 용량에 대한 계산의 원주율은 항상 3.1416으로 한다.

35. 심의 중 (Under Investigation)

조사가 필요한 사건(Incident)에 대하여 레이스 컨트롤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레이스 디렉터(또는 경기위원장)에 의해 심사위원회로 해당 사건이 심의를 요청한 상태를 말한다. 잠정 순위 발표 시 해당 문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36. 오토 슬라럼 / 오토 크로스 (Auto Slalom / Autocross(비서킷))

대형 주차장이나 서킷 일부 또는 카트 서킷 등을 활용하여 고속 슬라럼, 90도 터닝 등 도로주행 형태로 길고 넓게 조성된 코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주행하는 경기이다.

37. 오프로드 경기 (Offroad Competition)

비포장 또는 잔디에서 열리는 경기

38. 자격 정지 (Suspension)

자격 정지는 특정 기간 동안 자격 정지 대상자가 1) FIA 또는 ASN(또는 해당 기관의 권한에 속한)이 조직하거나 공인한 경기와 2) FIA 또는 ASN(또는 해당 기관의 권한에 속한) 조직하거나 공인한 또는 해당 기관의 회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조직한 사전 테스트 및 교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가하는 권리를 박탈한다.

39. 자동차 이스포츠 (Automobile Esports)

실제 자동차 경주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통해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가상 레이싱 경기이다. 시뮬레이션 레이싱 또는 심레이싱, 버추얼 레이싱, 이레이싱, 디지털 모터스포츠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가상현실의 모터스포츠를 뜻한다.

40. 잠정 순위 (Provisional Classification)

해당 세션 또는 경기 종료 후 게시된 결과를 말한다. 이 순위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1. 제외 (Exclusion)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어떤 경기 든 모두 참가를 완전히 금지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외된 사람은 이전 엔트리가 무효 처리되고 엔트리 비용은 몰수된다. 제외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계속해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짐카나 (Gymkhana)

가속, 브레이크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로, 정해진 코스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주행하는 경기이다.

43.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KARA에게 승인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를 대변하여 스포츠 경기의 조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회특별규정을 집행하는 단체이며, 경기 운영을 책임지는 1인, 대회주최자를 대표하는 1인, 경기 기술적 측면을 책임지는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집합체를 말한다.

44. 제한된 경기 (Restricted Competition)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기 참가자 혹은 선수가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국내경기 혹은 국제경기를 제한된 경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최자 초대 참가에 의한 경기는 제한된 경기이다.

45. 지역기록 (Local Record)

선수의 국적이 상관없이 ASN에 의하여 승인된 상설이나 임시 트랙에서 수립된 기록을 말한다.

46.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 (Championship, Cup, Trophy, Challenge and Series)

챔피언십은 시리즈 경기이거나 단독 경기일 수 있다.

오직 FIA만이 국제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으며 오직 KARA만이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다.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는 오직 KARA나 KARA로부터 서면에 의해 승인된 대회주최자만이 개최할 수 있다.

국내 챔피언십 대회는 최상위 클래스의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이상 가능한 규모여

야 한다. 만일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미만일 경우 챔피언십 대회 자격 유지 여부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47. 최종 순위 (Final Classification)

심사위원회가 서명되고 기술위원회 그리고/또는 모든 심사위원들의 결정이 완료되면 게시된 결과(대회 항소 또는 추후 기술 점검의 경우 통고가 추가될 수 있음)를 말한다.

48. 출발 (Start)

출발이란 단독의 경기참가자나 동시에 출발하는 다수의 경기참가자에 대하여 출발의 신호가 주어진 순간을 말한다.

49. 출발선 (Start Line)

시간 측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의 컨트롤 라인을 말한다.

50. 컨트롤 라인 (Control Line)

그 장소를 차량이 통과할 때 계측이 되는 선을 말한다.

51. 코스 (Course)

경기에서 선수가 주행하는 노선을 말한다. 서킷의 경우 트랙과 모든 런오프지역, 안전 배리어, 웬스, 방호벽을 포함한다.

52. 클래스구분 (Classification)

자동차의 실린더 용량이나 국내경기 차량규정에 준한 자동차의 구분이다.

53. 클로즈드 경기 (Closed Competition)

국내 경기가 KARA가 발급한 선수 라이선스를 가진 한 클럽의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클로즈드(Closed) 경기라고 한다. 이 경우 KARA의 공인을 받아야 하며 때에 따라 여러 클럽이 개최할 수 있다.

54. 테스트 (Test)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또는 시간 내에 각 경기 참가자가 선택해서 주행할 수 있는 공식 시간을 말한다.

55. 트랙 (Track)

서킷 경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포장된 도로로 포장된 표면 양끝 흰색 선 안쪽을 말한다.

56. 트랙 이탈 주행 (Off Track Limits)

트랙 제한선(트랙 양끝 흰색 선)을 차량의 4바퀴가 넘어서 주행했을 경우를 말한다. 슛킷, 와이드런, 코스이탈주행 등을 통칭한다.

57. 파크페미 (Parc Fermé)

파크페미는 대회특별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경기참가팀이 각 차량을 정해진 장소까지 이동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 차량검차가 행하여지는 경기는 파크페미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58. 피트 (Pits)

대회주최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팀, 팀원, 경주차에 제공한 공간을 말하여 피트 레인과 직접 연결된다.

59. 피트 개러지 (Pit Garage)

참가 차량의 조립 및 정비가 이루어지는 구간. 상설 서킷의 경우 창고 형태이며 천막 형태의 임시 시설물로 제공될 수도 있다.

60. 피트 레인 (Pitlane)

트랙의 일부로 경주 차량에게 피트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피트 레인을 경우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가 부여되며 위반 시 페널티가 부과된다. 피트 레인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 1) 패스트 레인 (Fast lane): 피트로 들어가거나 피트에서 나오기 위해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
- 2) 워킹 레인 (Working lane): 경기 도중 차량을 정비하거나 내구 레이스에서는 주유, 타이어 교체, 드라이버 교대 등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 워킹 레인에서 차량 주행은 불가하며 패스트 레인에서 바로 자신의 피트로 들어가야 하며 작업이 끝난 차량은 바로 워킹 레인에서 패스트 레인으로 진입하여야 한다.

61. 핸디캡 (Handicap)

차량이나 선수에 대해서 공평성을 주기 위하여 대회특별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방법이다.

62. 확인 중 (Noted)

경기 중 발생한 사건(Incident)에 대하여 레이스 컨트롤에서 조사 중인 상황을 말한다.

조사 완료 후 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을 할 경우 '심의 중'으로 변경하며 심의 요청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협의 없음'으로 변경한다. '협의 없음'과 '심의 중'은 잠정 순위 발표 시 해당 문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제2.2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는 내용은 FIA 국제스포츠규정 제20조 '정의'(ISC Article 20. Definitions)를 따른다.

제3조 경기규정

제3.1조 규정의 일반적 적용

국내에서 개최되어 KARA의 공인을 받는 모든 경기와 모든 행위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3.2조 경기의 개최

대한민국 내 개최되는 자동차경기는

1. KARA가 주최하거나
2. KARA가 허가한 주최자만 주최가 가능하다.

제3.3조 공식문서

모든 경기는 공식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히 대회특별규정과 공식 프로그램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공식문서 중 본 규정에 상반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는 그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4조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

대회특별규정, 공식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등의 모든 문서에 명확하게 '본 경기는 FIA의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에 의거해서 개최한다(Held under the International Sporting Code of the FIA and the National Competition Rules of KARA)'라고 명시해야 한다.

제3.5조 규정의 정통 및 준수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려는 모든 개인, 단체는 KARA에 라이선스의 교부를 신청하고 다음의 조항을 숙지한 후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FIA의 정관과 국제스포츠규정, 그리고 KARA의 정관과 국내스포츠규정을 숙지한다.
2. 위 사항 및 스포츠 기구의 결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예외 없이 따를 책임을 갖는다.
3.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KARA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
4. 차량이 대회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성능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3.6조 공인에 대한 취소

경기 조직 및 운영 시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을 어겨 안전 또는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이에 대해 벌칙이 규정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공인 경기 중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인은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조건적 공인도 가능하며, KARA는 이유를 밝히고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경기의 연기 또는 중지

경기는 연기 혹은 중지의 규정이 대회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나 심사위원회가 국가보안상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연기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기 또는 중지 할 수 없다. 24시간 이상 연기 또는 중지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경기조직

제4.1조 주최자

경기를 조직하는 단체, 팀, 개인을 주최자(대회주최자)라고 한다. 주최자는 그 권한과 의무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다.

제4.2조 주최자의 등록

KARA가 공인하는 경기를 개최하려는 주최자는 제3장 대회주최자 등록 규정에 따라 KARA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제4.3조 경기공인

어떠한 경기도 KARA의 경기 공인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KARA는 필요에 의해 부분적 또는 조건적 공인을 부여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4.4조 경기공인의 신청

경기 시리즈 등록신청은 대회 개최 2개월전까지 시리즈 등록신청서, 대회특별규정(스포츠 규정, 차량기술규정)을 KARA사무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경기 공인의 신청은 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회공인신청서, 대회특별규정(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드라이버, 오피셜 명단, 대회공인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제7장 대회 등록 규정 제12조 참조)

국제 경기의 공인 신청은 대회 개최 3개월전까지로 한다. KARA가 신청에 대한 비용은 매해 발표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공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부칙을 따른다.

제4.5조 경기공인 증명의 발급

KARA는 경기 공인 증명을 공문으로 발송한다.

제4.6조 법률 및 규정의 준수

경기는 일반 공도 혹은 서킷 또는 양쪽을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단, 조직 위원회가 관계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면, 경기 공인 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

1. 경기가 일반교통에 공개되어 있는 공도상에서 행하여질 경우 국내에서 시행되어 있는 교통 법규에 근거해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교통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는, 심사 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제4.7조 대회특별규정의 내용

대회의 특별규정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조문 (본 규정 제3.4조 참조)
2. 경기의 명칭과 경기 종목 (제2조 용어와 정의 참조)
3. 주최자의 주소와 이름
4. 경기의 장소, 일정
5. 심사위원 명단, 주요 오피셜 명단, 경기장 설명
* 레이스 디렉터 선임시 그 의무와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6. 경기의 세부사항, 경기차량의 세부적인 제한, 선수의 자격과 정원
7. 참가신청 기간
8. 참가비
9. 선수 지명의 최종 기일과 장소, 그 밖의 특별사항
10. 보험에 관한 사항
11. 선수의 교대나 자동차의 교환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것에 따른 특별사항
12. 공식 검차 일정
13. 공식 예선의 일정과 방법
14. 스타트 일시와 방법, 핸디캡의 규정
15. 스타트 시 선수의 반칙에 대한 벌칙 규정
16. 경기중의 연료보급에 관한 규정
17. 항의에 관한 특별사항
18. 경기의 중단, 연기, 중지에 관한 특별사항
19. 결승 심사방법과 순위 판정방법
20. 시상방법

21. 경주차의 안전규정(롤케이지, 소화장치, 전원차단장치, 견인고리등)
22. 경주차 무게측정의 정확한 기준과 부품의 사용, 개조의 범위등
23. 그 밖의 경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 특별규정의 변경

경기의 참가접수가 끝난 후에 대회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KARA와 경기 심사위원회가 인정하여 결정하게 되었을 때 대회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변경된 대회특별규정에 대해 드라이버 브리핑 전에 심사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하며 문서로 공식 게시의 의무를 가진다.

제4.9조 공식 프로그램의 내용

경기의 공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게시판과 대회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1. 본 규정 중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하는 사항 (제3.4조 참고)
2. 주최자와 조직위원의 이름
3. 경기 장소와 일정
4. 경기 시간과 간단한 설명
5. 팀과 선수의 이름, 경기차량에 주어진 식별용 번호 및 표시
6. 핸디캡이 주어지는 경우의 규정
7. 각 경기별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
8. 경기심사위원회의 이름, 경기위원장 및 주요 오피셜의 이름
9. 공인 단체의 표기

제4.10조 경기참가등록

경기참가자와 주최자의 계약은 본 규정과 대회특별규정에 따른 참가신청이 수리되는 것에 따라 성립된다. 이로 인하여 경기참가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경기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4.11조 참가에 관한 분쟁

경기참가자와 주최자간에 참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본 규정 '항소권' 규정에 따라 그 재정을 KARA에 신청하고 KARA는 이를 조정한다.

제4.12조 참가신청의 개시

주최자는 경기의 공인을 받은 후 참가자격이 있는 참가자에게 참가접수를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입사항을 기재, 서명하고 참가비와 함께 마감 전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제4.13조 참가신청서의 내용

참가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사항. (제3.4조 참고)
2. 선수, 경기참가팀, 경기 참가자의 이름과 KARA 라이선스 번호
3. 참가신청은 참가자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나 서명은 반드시 선수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4. 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에 근무하는 팀 관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5. 본 규정 중 다음 조항(경기참가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요원의 계약문의 서명)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및 서명은 신청서와 별도 용지에 하여도 된다.
6. 대회특별규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신청서 기입사항

제4.14조 경기참가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의 참가서약

1. 경기참가팀 관계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은 경기참가에 앞서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서약을 한다.

“나는 이 대회의 대회특별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 국내스포츠규정에 동의합니다. 나는 경기 참가에 따라 관련되어 일어난 사망, 부상, 그 밖의 사고에 대해서 절대로 KARA나 주최자, 조직위, 오피셜에게 경기에 관한 비난, 책임추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사고가 상기 주최 단체와 대회 관계자의 실수가 원인이 되었다더라도 변함 없습니다. 또 선수의 참가종목에 관한 표준능력을 가지고 참가차량도 코스와 스피드에 관해 적격하고 경기가 가능한 것을 맹세합니다.”

2. 이에 붙여 선수는 다음 양식의 서약문에 서명하여야 한다.

“나는 이 경기에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전에서 지장을 주는 신체적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KARA와 대회주최자에 알리고, 신체장애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교부 받지 않는 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전항 1,2에 규정한 서약문서에 18세 미만의 참가신청자의 경우 당사자의 부모와 법정 대리인이 신청서 및 별도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15조 참가신청의 마감

참가접수 마감의 기한은 대회 특별규정을 따른다. 대회주최자는 참가 신청 접수를 받을 때 KARA선수 라이선스 취득자에 한해 참가 접수를 받아야 한다.

제4.16조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한 참가신청

참가 등록의 신청은 우편, 팩시밀리, 이메일 그 밖의 통신 수단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단 신청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참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참가비가 첨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당 통신 수단에 기재된 발신 시간을 가지고 접수 날짜의 증거로 한다.

제4.17조 허위 또는 부정기입의 참가신청

허위 또는 부정기입을 한 참가신청은 무효이고 그 경우 신청자는 본 규정 위반으로 되어 참가비를 몰수당한다.

제4.18조 참가신청 거부

대회주최자는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늦어도 경기 개최 5일 이전까지 거부의 이유를 밝힌 뒤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거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의 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본 규정으로 인하여 참가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참가비는 반환된다.

제4.19조 참가신청 조건부 승인

대회특별규정으로 조건부 참가가 가능한 취지를 규정할 수 있다. 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0조 참가신청서의 접수 통지

대회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접수를 승인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정원을 넘는 신청이 있을 경우 대회특별규정으로 규정하는 법을 택하되 대회특별규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선착순으로 다른 방법을 주최자가 정할 수 있다.

제4.21조 참가접수 명단의 공포

대회주최자는 공식 참가접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기참가팀, 선수의 이름을 공식 프로그램에 넣어 공포하면 안 된다. 더구나 조건부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그 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가접수 명단의 발표는 참가 신청 마감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4.22조 드라이버의 가명 사용

1. 라이선스를 가명으로 등록하려면 KARA에 특별신청을 해야 한다.
2. 라이선스는 가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두 개의 가명을 사용할 수 없다.
3. 이 경우 승인되었다면 라이선스는 그 가명으로 발급된다.
4. 가명으로 등록된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든 경기에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
5. 가명을 바꾸려면 원래의 이름을 바꿀 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6. 가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명 또는 다른 가명으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을 때까지 변경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3조 조건부 참가 승인

참가자가 본 규정 제4.19조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선정이 있을 경우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 조건부 참가접수가 인정된다.

제4.24조 동일 차량의 중복 참가

한대의 차량으로 하나의 경기에 한번만 참가신청이 허용되나 KARA가 본 규정의 특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출장이 가능하다. 단, 챔피언십 경기는 동일 선수로 운전하면 안 된다.

제4.25조 자동차의 교환

참가신청서의 기입사항과 상이한 출전차량이 있는 경우 공식 프로그램이 발표된 후에도 경기심사위원회의 대회특별규정으로 규정하는 규격에 일치하면 동일 부분, 동일 클래스의 다른 자동차로 교환이 허용된다.

제4.26조 공식 통지

특별규정의 발표 후에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주최자와 경기참가자, 선수에 대해 공식 통지로 지시할 수 있다.

제4.27조 보험

대회주최자는 대회주최자 등록 규정에 근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KARA는 대회주최자에 대하여 보험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8조 경기참가자 및 선수의 공식 명단

대회주최자는 경기 참여가 승인된 참가자의 공식 명단을 늦어도 경기 시작 48시간 전까지 KARA에 보내고 각 경기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참가 신청이 이 시간

이후에 마감되는 경우는 예외로, 최소한 공식 검차와 선수 브리핑 직후 최종 엔트리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29조 성적 발표

대회주최자는 KARA와 각 경기참가자에 대해 경기가 종료되고 5일 이내 또는 KARA가 지시한 기한 내에 경기의 최종성적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4.30조 상금 등의 수여

대회주최자는 대회특별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경기의 최종성적 판명 후 3주일 이내 또는 KARA가 지시한 기한까지 모든 상금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 코스-도로 및 서킷

제5.1조 공공도로상의 경기코스

경기에 사용되는 도로의 선정은 KARA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경기코스의 승인신청은 주행로와 거리를 정확히 표기한 코스도를 첨부하여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일반도로상의 주행거리 측정

기록챌린지 이외의 경기 사용코스는 그 거리가 5km 이내의 경우 공인측량사가 도로중앙선을 계속하여야 한다. 5km 이상은 5만분의 1 이상의 국토교통부가 인증하거나 판매하는 지도를 통하여 정한다.

제5.3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 라이선스

상설,임시 서킷 또는 코스의 국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KARA를 통하여 FIA에 신청하여야 한다. FIA는 KARA와 협의하여 부적당한 경우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FIA는 거부나 취소 시 그 이유를 알려준다.

제5.4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

KARA가 부적당하다고 판정할 경우 이유를 밝히고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5조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의 기재문

FIA에서 발급되는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에는 주행거리, 허가되는 경기 차량의 카테고리, 서킷 또는 코스가 국제 또는 세계기록 챌린지에 사용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명기한다.

KARA허가의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에는 주행거리와 국내기록 챌린지에 사용되는 것인가를 기재한다. 또한 서킷 또는 코스에 관한 대회특별규정도 기재되어 경기 참가자가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 상설/임시 서킷 또는 코스의 조건

상설/임시 서킷 또는 코스의 충족조건은 FIA나 KARA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5.7조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의 공시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는 그 유효기간 중 서킷 또는 코스의 일정 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비

FIA나 KARA가 발급하는 서킷 또는 코스 공인에 대한 라이선스비는 FIA나 KARA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스타트 및 히트

제6.1조 스타트

1. 스타트란 단독 또는 동시에 출발하는 다수의 경기참가자에게 출발의 신호가 주어진 순간을 말한다. 시간 측정을 할 때에는 스타트와 함께 시작한다. 스타트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 ① 롤링 스타트
 - ② 스탠딩 스타트

2. 선수는 스타트의 신호가 난 순간에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도 스타트의 신호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 기록철헤린지 이외의 경기는 그 스타트의 종류를 반드시 대회특별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6.2조 스타트라인

1. 기록철헤린지와 롤링스타트에 의한 경기의 스타트라인은 차량이 통과함에 의하여 시간 측정이 개시되는 기준선을 말한다.
2.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경기의 스타트라인은 차량(또는 필요시 각 선수)이 출발 전에 지시 받은 정위치해야 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3. 대회특별규정에는 스타트 전의 모든 차량의 위치와 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6.3조 롤링 스타트

롤링 스타트란 시간 측정이 개시된 순간에서 차량이 이미 주행상태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롤링 스타트는 스타트신호가 나오기 전에 셰이프티카에 의해 유도되어 진다. 별도의 대회특별규정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 때 유도차를 제외한 선두의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지나는 순간 또는 별도의 신호가 제시되는 시점에 스타트가 성립된다.

제6.4조 스탠딩스타트

스탠딩스타트란 스타트 신호가 나는 순간에서 차량이 정지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기록은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통과하는 순간에 계측장치를 작동시키게 되는 차량의 부분이 그 스타트라인보다 10cm 후방에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그 차량의 엔진은 스타트에 앞서 시동시킨 것으로 한다.
2.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경기는 스타트에 앞서 엔진의 시동과 정지에 관한 사항을 대회특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독 스타트 또는 동시 스타트의 차량에 대하여:
 - 자동계측장치에 의하여 시간 측정이 행하여질 경우 그 차량(들)은 스탠딩스타트에

서 서술한 것과 같이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자동계측장치에 의해 시간 측정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시계에 의한 시간 측정이 행하여 지는 경우 그 차량(들)은 프런트 휠 스타트 라인 위에 있는 위치로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스타트라인 위치에 관계없이 대회특별규정으로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를 규정한 경우라도 시간 측정은 스타트의 신호가 난 순간에 시작된다. 이 때 서킷의 경우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에 관계 없이 1랩째부터 각 차량이 계측라인을 지날 때 계측을 한다.
 5. 스타팅 그리드의 최종발표가 있는 후에는 스타트 불가한 차량의 그리드는 비워둔 채로 두고 그 외의 경기 참가차량에게 공표된 그리드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

제6.5조 스타터(Starter)의 명령

선수와 출전차량은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거나 내려질 때 스타트 할 수 있다.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고 내려짐은 다른 적당한 신호를 동반하여도 되고 신호등으로도 가능하다.

제6.6조 반칙 스타트에 대한 벌칙

스타트 신호 이전에 제위치에서 전진한 경우 부정출발이 된다. 부정출발을 한 운전자는 어느 경우든 그 사람이 그 경기코스를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하여 벌칙이 가산된다. 그 벌칙은 곧바로 그 선수의 피트에 통보되어야 한다.

대회특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 내에서 앞서 밝힌 벌칙을 가중하거나 다른 벌칙을 추가할 수 있다.

제6.7조 스타트 오피셜

조직위원회는 스타트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사람 또는 몇 명의 오피셜을 지명할 수 있다. 스타트 오피셜은 반칙 스타트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그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8조 히트

하나의 경기에서 복수의 히트제 스타트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결정

하며 사전에 대회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에 발표하여야 한다. 히트제 스타트의 구성은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만이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동률

동률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기 참가자들은 순위 결과에서 이들이 기록한 순위에 걸려 있는 상금 및 그에 따른 상을 나눠가지거나, 이들 경기 참가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관련 경기 참가자들만으로 제한된 추가 경기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처음의 경기를 다시 치를 수는 없다.

제7조 기록

제7.1조 판정 관할권

KARA는 한국 국내에서 수립된 기록의 공인신청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 기록이나 세계기록의 공인신청은 KARA에 의하여 FIA에 제출되고 그 판정은 FIA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7.2조 기록수립의 자격을 갖는 차량

각각의 국제기록은 본 규정 제9조의 정의에 적합한 차량에 의해서만 수립이 가능하다.

제7.3조 공인기록

공인기록이란 지역기록, 국내기록, 클래스별 기록, 세계기록만을 말한다. 한 개의 같은 기록은 상기 구분된 분류에 의하여 여러 종류로 공인 받을 수 있다. 서킷에서 수립된 기록과 도로에서 수립된 기록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제7.4조 클래스별로 제한된 기록

그 클래스에서 기록을 수립하거나 갱신한 차량은 동일 클래스에 해당하는 세계기록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위의 클래스에서 기록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7.5조 공인기록 및 거리

국내기록, 국제 클래스별 기록, 세계기록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항에 실린 기록과 거리에 의해 공인 받을 수 있다. KARA는 자체적으로 국내 기록을 공인할 수 있다.

제7.6조 레이스 중에 수립된 기록

레이스 중에 수립되지 않은 기록은 어떠한 것도 공인하지 않는다.

제7.7조 기록의 등록

KARA는 국내에서 수립되거나 갱신된 기록의 등록을 공지하고, 또한 요구에 따라 국내 기록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KARA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7.8조 기록의 발표

공인되기 전까지 '공인 승인 중'이라고 명기하지 않는 한 관계자는 어떠한 상업적 광고로 사용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제8조 경기참가자와 선수

제8.1조 경기참가팀 및 선수의 등록

공인 경기에 참가하는 팀과 선수는 KARA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제8.2조 라이선스의 발급

KARA는 FIA 국제 라이선스 자격증을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며, 일정한 양식에 의한 국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제8.3조 라이선스 발급 권한

라이선스는 KARA가 별도로 정하는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8.4조 임시 경기참가 허가 조건

KARA의 타 ASN 발급 선수 라이선스를 소유한 자가 국내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KARA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제8.5조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국적

KAR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라이선스 유효기간 동안에는 한국 선수로 준한다.

제8.6조 라이선스의 발급거부

KARA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라이선스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8.7조 라이선스의 유효기한

국내 개인 라이선스(선수, 오피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기타 단체 라이선스와 FIA 국제 라이선스는 매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8조 라이선스의 수수료

KARA가 발급하는 라이선스의 수수료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8.9조 라이선스의 효력

1. KARA에 의하여 발행된 국제 선수 라이선스나 국내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는 KARA 공인 경기와 국제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대회특별규정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선수 라이선스의 소지자가 그 유효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격(운전면허증)을 상실했을 때에는 라이선스는 무효가 되고 곧바로 KARA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10조 라이선스의 취소

금지된 경기, 비공인경기에 참가, 운전, 직무 수행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가한 자는

KARA에 의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8.11조 선수의 변경

1. 참가신청이 마감되기 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대회특별규정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하다.
2. 참가신청이 마감된 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직위원회는 선수 교체 및 추가 선수 명단을 KARA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2조 경기참가자, 선수, 그 외 관계자의 책임

경기참가팀은 지명한 선수, 탑승자, 팀 관계자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국제스포츠 규정, 본 규정, 경기 대회특별규정, 공식통지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경기참가자와 팀은 대회에서 얻은 정보를 대회의 명예훼손이나 비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별도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제8.13조 참가 변경 금지

국제경기나 국내경기에 참가를 등록한 경기참가자나 선수가 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경기에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개최일로부터 KARA가 정하는 기간동안 자격정지가 적용된다.

단, 그 경기가 외국에서 개최됐을 경우는 KARA와 해당 ASN사이에 있어 벌칙에 대해 합의가 성립되어야 한다. 양 ASN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그 문제는 FIA에 제소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9조 자동차

제9.1조 자동차의 분류

KARA는 기록챌린지의 경우를 제외한 국내경기에 참가하는 자동차를 국내경기 차량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9.2조 위험한 차량

국내경기에 출장하는 자동차는 구조와 주행적성, 장치에서 국내경기 차량규정에 따라야 한다. 경기심사위원회는 자동차의 구조나 상태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경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9.3조 방화벽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자동차는 화재발생시 화재가 직접 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과 운전자 사이에 유효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4조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1. 특정한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 또는 FI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자동차를 출장 정지,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

2. 자동차모델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특정한 자동차 모델을 출장 정지,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을 따른다.

제9.5조 차량 의무 검사 규정

- 모든 참가 차량은 공식 연습 시작 전까지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차량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심사위원회와 기술위원장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경기 중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경기장에서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외부에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완료 후 재검사를 통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페널티가 부여되며 실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제9.6조 차량에 붙이는 광고

KARA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적용하는 특별조건을 규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9.7조 허위 광고

경기참가자나 단체가 경기나 기록의 광고를 할 경우는 발표된 성적의 일반조건과 특별조건, 경기와 기록의 성질, 차량의 분류, 클래스 구분, 취득한 성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중에게 이의를 갖게 하는 성질이나 과대광고는 그 광고의 해당 경기참가자나 단체에 대하여 본 규정 제11조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오피셜

제10.1조 오피셜의 구성

KARA의 심판원 라이선스를 소지한자가 오피셜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팀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소속 팀이 참가하는 대회에 오피셜로 참가할 수 없다.

다음은 오피셜의 종류이며, 각각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각 위원장은 보조요원의 배치, 임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대한 돕는다.

- 심사위원 (the stewards)
- 경기위원장 (the clerk of Course)
- 레이스 디렉터 (the race director)
- 사무국장 및 요원 (the secretary of the Event)
- 기록위원장 및 요원 (timekeepers)
- 기술위원장 및 요원 (scrutineers)
- 피트위원장 및 요원 (pit marshals)
- 패독위원장 및 요원 (paddock marshals)
- 코스위원장 및 요원 (track or road marshals)

- 안전위원장 및 요원 (emergency coordinator)
- 의료위원장 및 구급대원 (medical)
- 사실판단관 (judge of fact)

제10.2조 감독권

KARA는 국제스포츠규정 및 본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공인대회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1. KARA는 대회에 1명 이상의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안전한 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의 안전시설(트랙노면 및 주변 안전시설, 레이스 컨트롤, 피트, 짐차장, 의료장비 등)을 검수 할 수 있다.
 - 2) 오피셜 인원 및 안전차량의 배치 등 경기운영 관련 안전사항을 검수할 수 있다.
 - 3) 경기장 시설 및 대회운영을 감독하며, 문제 발생시 경기장과 대회주최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와 개선을 요청을 할 수 있다.
 - 4) 대회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장소의 출입이 가능하다. 단 심의중인 심사위원실과 레이스 중의 레이스컨트롤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5) 대회운영에서 발생하는 대회 결과, 기록지, 보고서 등 대회 관련 자료를 보고 받을 권한이 있으며, 각 세션(드라이버 브리핑 등)의 종료 또는 공식기록(연습, 예선, 결승 등) 발표 후 사무국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6) 대회 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7) 감독관은 경기장 안전시설 및 대회운영의 미비점과 개선 내용을 협회에 보고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2. 감독관의 임무

- 1) FIA의 ISC 규정과 KARA의 국내규정 및 파견대회의 대회특별규정(스포츠규정/기술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각 라운드에 적용된 대회특별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경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 전 경기장 측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수하여야 한다.
 - 레이스 컨트롤 및 CCTV 관리 상태, 무전기 상태, 메디컬 센터 관리 상태
 - 서킷 인스펙션 항목
 - : 스타트 아치 및 신호등 작동 유무

- : 트랙, 피트로드, 피트 입·출구, 그리드 등 라인 마킹 상태
- : 피트 입·출구 속도 표지판 상태
- : 피트 내 소화기 관리 상태
- : 서킷 상태(주행 라인, 트랙 노면, 연석), 안전지대, 잔디 관리
- : 가드레일, 타이어 베리어, 테크프로, 안전펜스 관리 상태
- : 서킷 내의 광고, 홍보물, 현수막 설치 상태
- : 서킷 내의 소화기 관리 상태
- : 각 포스트 상태 및 일련번호 관리

3. 감독관은 KARA에 경기 중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 경기임원의 조직구성

1. 최소 필요 임원

경기는 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경기위원장, 코스, 안전, 기술, 피트, 기록 등으로 구성된 경기위원회와 대회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으로 경기 임원을 구성한다.

2. 레이스 디렉터

각각의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에서 경기 전 기간 동안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수 있다.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레이스 디렉터의 의무와 권한을 관련 대회특별규정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4조 KARA의 심사 파견 및 승인

KARA는 KARA가 주최하는 경기나 공인을 부여한 경기에 대하여 적어도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임명,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다른 오피셜들은 KARA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최자가 임명할 수 있다.

제10.5조 이익의 충돌

심사위원, 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기술오피셜 그리고 사무국장은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받는 거래, 상업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6조 겸직

조직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심사위원을 제외한 동일자가 본 규정 제10.1조에 명시된 임무의 여러 종류에 대하여 겸임 할 수 있다.

제10.7조 금지된 임무

어떠한 임원도 하나의 경기에서 임명받은 것 이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 어떠한 오피셜도 자기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외의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10.8조 오피셜의 보수

심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하며, 그의 오피셜들은 KARA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0.9조 심사위원회의 책임

1. 심사위원은 경기의 조직이나 경기 주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으며, 주최와 연관된 어떠한 운영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된다.
2. KARA가 직접 주최하는 경기의 경우는 심사위원이 주최자의 임무를 겸임하여도 된다.
3. 국제 및 국내자동차경기 규정집과 대회특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4. 공식 스케줄과 참가 엔트리를 확인하고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해야 하며, 선수들의 메디컬 체크 여부와 이전 경기에서의 페널티, 오피셜의 음주 등 특이사항 등을 점검한다.
5. 공식 스케줄 시작 전 트랙의 상태와 의사, 앰블런스, 소화기 등의 배치 여부와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적정 인원의 오피셜과 구난 차량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킷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6. 상기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경기위원장에게 공식 스케줄의 시작을 지시한다.
7. 심사위원은 공식연습, 공식예선, 결승레이스가 개최될 때 항상 심사위원실에 있어야 하며,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8. 심사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최종보고서에 서명하여 KARA에 송부한다. 이 보고서에

는 각각의 경기의 성적결과 및 제출된 모든 항의 또는 선고한 출장 정지(실격)의 상세한 보고가 포함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이 부과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심사위원회는 참가 선수, 오피셜의 규정된 KARA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2개 이상의 경기가 행하여지는 대회의 경우에는 경기마다 다른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11. 심사위원장은 대회를 계획하고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투표에 있어서 동수가 되었을 경우 재결정권을 가진다.

제10.10조 심사위원의 권한

1.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 본 규정, 대회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2. 경기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이런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된다.
3. 대회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적용하는 벌칙을 결정한다.
4. 대회특별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히트 경기의 경우 그 구성이나 경기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6. 동률의 경우 재스타트(new start)를 허가할 수 있다.
7. 선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8. 오피셜이 제출한 판정의 정정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9.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제외 또는 실격처리를 할 수 있다.
11. 순위 변경을 할 수 있다.
12.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차량이나 선수는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
13. 참가할 자격이 없거나 부당, 부정 행위를 한 경기참가팀이나 선수를 한 경기 이상 제외시킬 수 있다.

14. 임무 수행중인 오피셜의 지시를 거부한 경기참가팀이나 선수를 코스 또는 일정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나 국가보안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16. 경기참가자와 대중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이나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스타트라인, 결승선의 위치, 그 외의 모든 문제를 공식 프로그램에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17. 레이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18. 최종 순위와 결과를 발표 할 수 있다.
19. 기술 검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 특별한 경우 대리의 심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1. 심사위원은 우선적으로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받는 거래, 산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심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으로 공인대회의 위상 및 심사위원회의 품위를 훼손 할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제10.11조 경기심사위원회의 보고에 기준한 KARA의 권한

KARA는 경기심사위원회의 경기 결과에 대한 보고가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의나 항소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상황 및 관계자를 조사하여 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0.12조 레이스 디렉터의 임무

1. 레이스 디렉터는 각 챔피언십, 컵,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전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임명될 수 있다. 레이스 디렉터의 자격은 오피셜 라이선스 A 등급 이상 소지자 이어야 한다. 단, 선수 A라이선스 소지자는 레이스콘트롤 2회 이상의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레이스 디렉터가 임명될 경우 그 임무와 책임이 아래에 제시된 것과 다를 경우 대회 특별 규정에 명시한다.
3. 레이스 디렉터는 항상 경기위원장과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4. 레이스 디렉터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며 경기위원장은 레이스 디렉터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 일정표를 준수하는 연습주행과 예선의 통제, 그리고 레이스 디렉터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면 국제스포츠규정과 대회특별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제청하여 일정표를 변경할 수 있다.
6.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때, 연습주행 또는 레이스의 중단, 이후 재시작 절차에 대한 진행 (사전에 심사위원회와 협의되어 있어야 하며 대회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 스타트의 진행
8. 세이프티 카의 사용

제10.13조 경기위원장의 임무

1. 경기위원장은 경기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고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2. 여러 개의 경기를 포함하는 경우 각 경기마다 별개의 경기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경기위원장은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경기의 운영 책임을 진다.
4. 치안의 책임을 갖고 특히 공공안전을 위해 파견된 행정당국과 연락하여 경기장내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5. 모든 오피셜이 각자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재자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6. 모든 오피셜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도록 한다.
7. 참가의 자격을 갖지 않는 경기참가팀 또는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8. 각각의 자동차가 프로그램에 명시된 식별번호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9. 지명 받은 선수가 해당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자동차를 종목과 클래스에 따라 통제한다.
10. 자동차를 정해진 순서대로 스타트라인에 정렬하여 출발시킨다.
11.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프로그램 변경 제안과 경기참가자의 부정행위, 규정위반, 경기참가자의 이의신청의 제안을 행한다.

12.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경기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
13. 기록위원, 기술위원, 코스위원의 보고서와 순위의 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14. 담당한 경기에 관하여 최종보고서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거나 경기 사무국장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경기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0.14조 경기 사무국장의 임무

1. 경기 사무국장은 경기의 조직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오피셜을 모집하고 경기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치한다. 또한 오피셜에게 필요한 정보와 장비, 물자등의 제공을 담당한다.
3. 모든 오피셜이 각각의 임무에 정통하고 필요한 부대적 자료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각 경기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 경기위원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각 보고서에 정확한 서명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5. 참가 엔트리 및 모든 대회의 문서를 관리하며 대회결과를 게시하고 발표한다.
6. 경기 스케줄을 작성하고 배포한다.
7. 시상식의 진행을 담당한다.
8. 경기에서 발생하는 벌금을 납부 받고, 벌금과 벌금내역을 5일 이내에 협회 사무국으로 전달한다.

제10.15조 기록위원장의 임무

기록위원장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의 개시와 함께 경기위원장의 필요한 지시를 부여 받는다.
2. 경기위원장에게 지시 받은 경우 스타트의 신호를 한다.
3. 계측은 KARA에 의하여 승인된 계측장치만을 사용하고 1000분의 1초까지의 계시를 필요로 한다.
4. 각 차량이 코스를 완주하여 얻은 기록을 확정한다.

5. 자기의 책임하에 기록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다른 모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기록챌린지 내지 테스트의 경우는 KARA에 제출한다.)
6. 기록위원장은 심사위원이나 KARA의 요구가 있으면 계측 기록 서류의 원본을 제출한다.
7.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의 지시가 없는 한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 이외의 사람에게 공식기록이나 성적을 통보하지 않는다.

제10.16조 기술위원장의 임무

기술위원장은 자동차의 기계장치에 관한 모든 검차를 담당한다. 기술위원장은 경기위원장과 함께 자동차의 중량과 차체, 부속품의 치수, 차량의 규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안전장비, 경기참가팀, 선수의 서류(선수증, 운전면허증, 보험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한 모든 점검을 담당한다.

1. KARA나 경기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경기 개시 전, 경기 개최 중, 종료 후 그 검사를 실시한다.
2. KARA에서 지정 또는 승인한 검차 장비를 사용한다.
3. 검차의 공식결과를 KARA, 조직위원회, 심사위원회, 경기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4. 기술위원장은 그 책임하에 검차보고서를 작성, 서명하여 3항에 명시된 자에게 제출한다.

제10.17조 피트위원장의 임무

1. 피트 위원은 경기 진행 중에 있어서 경기참가팀과 선수가 행하는 자동차의 관리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작업을 감독하고, 규정 및 대회특별규정의 해당 항목을 준수하게 하는 임무를 가진다.
2. 피트 위원장은 경기위원장의 지휘 하에 경기참가팀 또는 선수가 행한 모든 위반 행위를 즉시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피트 위원장은 각 경기의 종료 후 주어진 지시에 따라 경기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보고서를 통하여 임무에 관한 보고를 행하여야 한다.

제10.18조 코스위원장과 트랙 마샬(코스요원)의 임무

1. 코스요원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진 코스상의 포스트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코스요원은 경기 개시 후 경기위원장의 지휘하에 각자의 포스트가 관찰하는 구역에 생기는 모든 정보를 무전, 보고서 등을 이용해서 곧바로 경기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코스요원은 코스 상에 깃발을 이용한 신호를 담당할 수 있다.
4. 각 경기 종료 후 코스요원은 자기가 확인한 사고에 대하여 문서로 코스위원장을 통해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코스위원장은 트랙 마샬의 배치, 근무 환경, 무전에 대한 전체적 관리를 한다.

제10.19조 안전위원장의 임무

1. 안전위원장은 구난, 소방, 의료 팀에 대한 전체 책임과 총괄을 맡는다. 이는 각 팀의 조직, 장비 편성, 배치를 포함하며,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 대응 팀을 운영한다.
2. 경찰 및 소방 당국, 지정 병원을 비롯한 유관 협조 기관 관리 및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제10.20조 특별 오피셜의 지정

경기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병원, 소방서, 서킷에서 파견한 인력이나 선수 출신으로서 참가자의 주행에 관해 조언하는 인력(Driving Standard Adviser)을 특별 오피셜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 오피셜은 레이스 디렉터 또는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21조 사실 판단관

경기 중에 선수가 주행 라인을 밟았거나 넘었는지를 확인하고, 대회특별규정 또는 특별규칙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판단하는 사실 판단관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사실 판단관은 심사위원회의 지명하에 트랙 오피셜 또는 그리드 오피셜 또는 스타트/피니시 라인 오피셜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지명될 수 있다.

제11조 벌칙

제11.1조 규정위반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반칙과 함께 다음 행위도 본 규정의 위반이 된다.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1. 경기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거나 받은 행위 및 이와 관련된 미수 행위
2. 해당 경기에 참가자격이 없는 선수이거나 부적당한 차량으로 경기에 참가한 행위
3. 경기나 모터스포츠 일반에 관련한 부정행위
4. KARA나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제11.2조 벌칙

1. 주최자, 경기참가팀, 선수, 탑승자, 미캐닉, 팀 관계자, 오피셜 그 외의 라이선스를 소지한 누구라도 본 규정과 부칙, 경기 특별규정과 고시, 경기 공인 등을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선수, 오피셜 등 라이선스가 없는 인원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 벌칙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KARA의 상벌위원회에 의해 제11.3조에 의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3. 심사 위원회의 결정이 안전 혹은 경기참가팀과 선수의 부정참가에 관한 경우 또는 동일경기 가팀과 선수가 동일 경기 중에 추가 위반함에 의해 실격 처분이 처해져야 할 경우에는 즉시 제외시킬 수 있다.
4. 단, 경기참가팀과 선수가 상기 이외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구제조치로서 제재의 적용은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특히, 해당 경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이후의 경기 참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핸디 캡 규정의 적용 결정은 유보된다.
5. 항소에 대한 유예효과는 그 경기참가팀과 선수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

지는 않으며 공식 순위에도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6. 항소 대상이 될 수 없는 페널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스톱 앤 고(stop and go) 페널티 등 스포츠 규정에 명시된 페널티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 세계 도핑 방지 운동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A에 정하는 FIA 안티 도핑 규정 내에서 관련된 벌칙을 적용한다.
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6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 「금지 목록」을 개정·고시한다.

제11.3조 벌칙의 종류

1. 경고
2. 벌금
3. 공익 업무 수행 의무
4. 기록 삭제
5. 그리드 순위 강등
6. 강제적 피트 스타트 (start a race from the pit lane)
7. 타임 페널티 (time penalty or penalty lap)
8.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drive-through penalty)
9. 스톱 앤 고 (stop and go)
10. 제외 및 실격
11. 출장정지
12. 자격상실

심사위원회나 KARA가 지정한 인원 및 단체는 조사를 진행하고 벌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외 및 실격, 출장정지,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서 변론의 기회를 준다.

제11.4조 벌금

벌금은 국제스포츠규정, 본 규정 및 대회특별규정을 위반하거나 경기위원회의 명령이 없이 행동한 경기 참가팀, 선수, 탑승자 또는 팀 관계자에게 KARA 상벌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1.5조 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

국제스포츠규정이나 FIA의 공식 공고에 의해 새롭게 통지 될 때까지 최고 벌금액은 250,000 유로로 한다.

제11.6조 벌금의 납부 책임

경기참가팀은 KARA, 경기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선수, 탑승자, 팀 관계자 등에게 부과되는 벌금 납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1.7조 벌금의 지불기한

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대회사무국을 통해 KARA에 지불하여야 한다.
2. 지불이 늦어지는 경우는 벌금미납 기간 중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
3. 벌금은 KARA에 의해 모터스포츠 발전에 사용한다.

제11.8조 제외 및 실격 (Exclusion)

1. 제외 및 실격의 선고는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 1) 제외는 그 대상이 된 자가 1경기 이상 참가가 금지되는 것이다.
 - 2) 실격은 그 대상이 된 자가 참가한 1경기 이상의 결과가 취소되는 것이다.
2. 제외 및 실격을 받으면 이미 지불되어 있는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9조 출장정지 (Suspension)

1. 출장정지는 중대한 반칙에 대하여 KARA와 FIA만 선고할 수 있다.

- 출장정지는 그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모든 경기에 참가하는 권리를(벌칙의 적용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KARA의 관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국내적 경우와, FIA 총괄 아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국제적 경우가 있다.
- 출장정지가 내려지면 그 기간 동안 경기에 대하여 이미 참가 등록한 것은 무효가 되고 지불한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10조 라이선스의 회수

1. 국내출장정지 (National Suspension)

국내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자 또는 경기 운전자는 자신의 라이선스를 KARA에 반납하여야 한다. KARA는 국내출장정지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 및 발송한다.

2. 국제출장정지 (International Suspension)

국제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자 또는 경기 운전자는 자신의 라이선스를 KARA에 반납하여야 한다. KARA는 국제출장정지 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는 해당 라이선스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상기의 조항에 있어서 KARA에 대한 라이선스의 반납이 지연했을 때는 출장정지의 기간은 그 지연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1.11조 출장정지의 효력

KARA에 의해 선고된 출장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 효력은 KARA의 관할 영역 내에 한정된다. 단, KARA가 그 벌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KARA는 FIA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FIA는 그 취지를 다른 모든 ASN에 대하여 통지 한다. 각각의 ASN은 즉시 그 출장정지를 등록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국 이외에서의 출장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11.12조 자격상실 (Disqualification)

자격상실은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자격상실은 지극히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KARA에 의해 선고될 수 있다. 자격상실의 처분은 그 결과로 이미 한 참가 등록은 무효가 되고 참가비는 몰수된다.

제11.13조 자격상실의 효력

자격상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인 효력을 가진다. 자격상실은 모든 ASN에 통지된다.

제11.14조 FIA에 대한 벌칙처분의 통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정지 및 자격 상실의 처분은 FIA가 선고한 벌칙을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각 ASN에게 통보되며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기 ASN에서 FIA에 통보된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에 대해서도 FIA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15조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통지

KARA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FIA에 그 처벌을 행한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6조 자동차의 자격상실, 출장정지 또는 제외

특정자동차나 특정 모델의 자동차를 이용한 경기 참가는 금지 될 수 있다.

제11.17조 수상 권리의 상실

경기 출장정지, 자격상실, 제외 처분을 받은 경기참가팀 및 선수는 그 경기에서 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제11.18조 순위 및 상의 변경

제11.17조가 적용된 경우 심사위원회는 순위와 상에 관한 성적의 변경을 발표하고 다른 선수의 순위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1.19조 벌칙의 공표

FIA나 KARA는 개인, 팀, 자동차 등에 내려진 처벌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발표 또는 발표시킬 권한을 가진다. 처벌이 발표된 개인이나 단체는 FIA, KARA, 그 공시를 발표한 자에 대해 반대행동(소송)등을 취할 수 없다. 만약 반대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회원 및 회원단체의 자격상실 사유가 되지만 항소권은 보장된다.

제11.20조 벌칙의 사면

KARA는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정에 기준하여 부과한 자격상실처분의 기간을 경감, 자격 상실처분의 면제를 할 수 있다.

제12조 항의

제12.1조 항의권

1. 경기참가자가 주최자, 임원, 다른 경기참가자나 선수, 경기관계자의 결정, 행위, 과오에 의해 자신이 부당하게 처우됐다고 판단할 경우는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2. 임무 수행중인 오피셜은 항의가 제출된 경우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두 명 이상의 복수의 경기 참가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관계된 경기참가자 전원에게 각각 항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 항의의 대상과 항의서 제출

12.2.1 항의의 대상

1.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 코스의 길이
 - 핸디캡
 -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 경기 중 발생하는 오류, 부정 또는 규정 위반
 - 경기 종료 후 순위

12.2.2 항의서 제출

경기에 관한 항의는 사무국을 통해 경기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경기위원장의 부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된다.

1. 항의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관련 규정
 - 항의 당사자와의 관련 내용
 - 항의 대상과 발생 시간, 장소

다수의 참가자들과 관계된 경우, 참가자 각각에게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한 드라이버가 다수의 차량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 항의 기한

항의	시간 제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차량의 사전 검차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까지
코스의 길이	
핸디캡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또는 스포팅 규정 또는 대회특별규정에 정의된 규정 적용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스포츠 규정 또는 대회특별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히트 또는 결승 구성 발표 후 30분 전까지
경기 중 발생하는 의심되는 오류나 부정, 경기 규정 위반	30분 이내에 항의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거나 예외적으로 스포팅 규정 또는 대회특별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 결과 발표 후 30분 이내
차량규정위반에 대한 의심되는 항의	
경기 종료 후 확정된 결과	

제12.4조 항의의 심문

1. 항의자 및 항의 대상인 자의 심리는 그 항의의 제출 후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2. 당사자는 소환되어야 하며 증인을 동행시킬 수 있다.

3. 심사 위원회는 당사자 모두가 직접 소환을 받도록 해야 한다.
4.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이 결석한 경우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 당사자 대상 심리 후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는 추후 결정을 하며, 그 장소와 시간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5조 접수할 수 없는 항의

1. 사실판단관(Judges of fact)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이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 최종결정이지만, 해당 선수가 어떤 조건에서 코스를 완주했는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정만으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두 명 이상의 경기 참가자를 상대로 한 단일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12.6조 포상과 시상 발표

1. 항의 제기 대상이 된 경기 참가자가 획득한 포상은 그 항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 질 때까지 보류한다.
2. 경기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항의가 제기된 경우 주최자는 잠정 순위 결과로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포상은 그 항의(항소를 포함하여)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 질 때까지는 보류한다.
3. 그러나 항의가 순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항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이 수여될 수 있다.

제12.7조 재경기

경기심사위원회, KARA는 재경기를 지시할 수 없다.

제12.8조 항의의 무효

1. 항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 항의보증금은 몰수된다.
2. 항의가 부분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되어 있는 항의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의가 완전히 인정을 받았을 경우 전액 반환될 수 있다.
3. 정당하지 않은 의도로 항의를 제출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본 규정에서 명시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항소

제13.1조 권한의 범위

KARA는 국내 항소 제도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경기참가자의 항소권을 보장한다.

제13.2조 국내 항소 기관

KARA는 KARA 회원 또는 비회원들로 항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상황에 따라 3인에서 5인(법적 자문단 제외)으로 구성된다. 다만, 해당 경기의 경기참여자, 선수, 오피셜과 연관이 있는 자거나 항소 안전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연관 있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3.3조 국내 항소 절차

1. 모든 경기 참가자는 그 국적에 관계 없이 심사위원회가 선고한 벌칙 또는 결정에 대하여, KARA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결과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대회 사무국 또는 심사위원회에 항소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통보해야 하고 항소 보증금 일부(50만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항소의사는 이 시점부터 96시간 동안 유효하다. 항소 의사 통보 후 항소를 취하하였을 경우 미리 지불한 항소 보증금 일부(50만원)는 몰수된다.
2. 잔여 항소보증금(450만원)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 받은 지 96시간 안에 지불되어야 한다. 의사를 전달하고 항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항소 보증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항소보증금은 매년 KARA가 별도로 정한다.

3. 항소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4.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소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5. KARA는 최대 3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4조 판결

1. 항소위원회는 벌칙 또는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벌칙의 경감, 가중을 결정할 수 있으나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할 권한은 없다.
2. 항소위원회의 판결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제14.1조 규정의 해석

KARA는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터스포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4.2조 규정의 변경

KARA는 필요시 본 규정이나 동부칙의 변경을 이사회에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제14.3조 그 외의 규정

그 외의 서술 되어 있지 않은 규정 내용은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에 의거한다.

제14.4조 본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